

○○○검찰청		
우	/ 주소	/ 전화 / 팩스
수신자 : 발신자 : ○○○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㉠		
제 목 : 항고·재항고사건 결정통지		
에 대한 항고·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		
결 정	사 건 번 호	항(재 항) 제 호 <○○○지검(지청) 형제 호>
	연 월 일	
	결 과	
이 유		
비 고		
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「형법」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, 「공직선거법」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,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(「검찰청법」 제 10조제3항)를 각각 할 수 있으며, 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(지방검찰청 또는 지청)에,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.		